

## 제 언

# 웹사이트 회원가입시의 개인신상정보 입력요구에 대하여

김 기 훈 / 한국정보문화센터 영상미디어부장

90년대 초 필자는 한 PC통신 내의 어떤 동호회에 가입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가입시켜줄 수 없다는 동호회 운영진의 회신을 받고 PC통신 운영진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문의내용의 핵심은 ‘내가 입력한 주민등록번호가 그 동호회 운영진에 의해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다고 PC통신업체가 보증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민등록번호입력을 동호회 가입의 필수절차로 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점이었다.

정보사회는 성숙한 정보시민을 요구하며, 정보시민은 정보이용능력만이 아니라 정보시민의식(정보윤리의식과 정보권리의식)을 갖춰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상의 개인정보에 대한 규범을 세워가는 자각적 네티즌들의 정보시민운동은 정보사회를 앞당기는 중요한 동인이라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아마도 PC통신 운영진의 요구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 동호회가입이 승인되긴 했지만, 관련 당사자들 간에 충분한 토론이 이뤄졌거나 이 건과 관련된 규칙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보지 못했다.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 필자는 제법 마음에 드는 국내의 한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이 필수절차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아직까지 거기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그 웹사이트는 결과적으로 ‘가입절차가 마음에 안들면 가입하지 않으면 된다’고 버티고 있는 셈이고, 이에 대해 필자는 개인적,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웹(WWW)이 인터넷의 대표서비스로 자리잡게 되면서 소수의 이름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업체만이 아니라 정부기관, 기업, 사회단체, 개인 등 거의 누구나 웹 사이트 하나쯤은 쉽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의 개방성, 무정부성에 근거하여 소위 ‘정보 민주화’와 ‘Prosumer’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중 하나는 인터넷 이용자뿐 아니라 사이트 운영자도 어느정도의 익명성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다. 즉 굳이 이를있는 정보통신업체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에 상시적으로 접속할 수만 있으면 사이버공간내의 일정 영역에 대해 운영권을 자임(自任)하고 유지해갈 수 있다.

이 무수히 많은 웹사이트들 중 상당수는 유료화, 이용자 관리 등 다양한 필요 때문에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경우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개인신상정보(이름, 전자우편주소, 생년월일, 주소, 집과 직장의 전화번호(집, 직장), 직장명,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의 입력을 요구한다.

여기서 이용자들 대부분은 개인신상정보에 대한 신뢰할만한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문제발생시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즉, 해당 웹사이트의 관리자가 어떤 목적으로 회원신상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지, 나의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DB는 해킹 등으로부터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해당 웹사이트의 관리자 개인 또는 그로부터 이를 전달받는 제3자에 의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어떠한 관리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만약 이러한 것들이 확보되지 않아 나에게 물질적, 정식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웹사이트 관리자는 나에게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지에 대해 거의 알 수 있는 바가 없다.

문제의 심각성은 개인신상정보가 흔히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각종 범죄의 중요한 자원으로 사용된다 는 점에 있다. 즉, 어떻게 나의 주소와 신상에 대해 알고 보내지는 건지 모를 술한 일반우편과 전자우편들 (스팸메일) 중 상당부분은 각종 웹사이트에 이용자들이 등록해 놓은 신상정보를 그 원천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개인신상정보는 비밀번호(암호)를 알아내는 주된 단서로 사용되며, 이를 매개로 통신ID의 도용, 각종 금융 범죄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이미 선진외국들에서는 1970년대부터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들이 제정되어 왔다. 미국의 [프라이버시법](1974), 서독의 [연방정보보호법](1977, 1986년 개정), 프랑스의 [정보처리과 일 및 제 자유에 관한 법률](1978), 캐나다의 [프라이버시법](1982), 영국의 [데이터보호법](1984), 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에 대한 지침에 관한 이사회 권고](1980), EU의 [개인 데이터와 그 자유이동에 있어서의 개인의 보호에 관한 지침](1995)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들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조치들을 의무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OECD 권고의 8대 원칙은 그 주요 내용을 잘 망라하고 있다: ①목적한정의 원칙(개인정보 DB를 설치할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과 가공의 목적이 명확하고 한정되

어 있어야 함), ②수집제한의 원칙(본래 목적에 직결되는 항목에 국한하여 개인정보가 수집·가공·처리되어야 하며 방법 역시 정당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함), ③정보의 질에 관한 원칙(개인정보의 내용은 이용목적에 적절하도록 항상 정확하고 최신의 것으로 유지되어야 함), ④안전보장의 원칙(보유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있을 수 있는 제반 위험(망설, 부정한 접근·변조·이용·유포 등)에 대한 안전보장조치가 행해져야 함), ⑤이용제한의 원칙(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없는 한 본래의 목적 이외의 '2차적 이용' (내부적 이용과 외부적 제공)이 방지되어야 함), ⑥공개의 원칙(개인정보의 존재여부, 성격, 주된 이용 목적, 정보관리자 등이 공개되어야 함), ⑦개인참가의 원칙(정보주체는 자기정보를 열람하고,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삭제도 요구할 수 있어야 함), ⑧책임의 원칙(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의 정보관리자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함) 현재 국내의 웹사이트들은 외국의 웹사이트에 비해 훨씬 상세한 개인신상정보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책임있는 설명도 거의 없는 것이 눈에 띈다.

별로 사회적 지명도도 없고, 따라서 신뢰성도 확보하지 못한 웹사이트조차도 주민등록번호 등 매우 상세한 개인신상정보를 아무 거리낌없이 요구하며, 우리나라 이용자들 상당수는 이에 대해 별 거부감 없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윈도 98과 펜티엄Ⅲ 칩에서의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불매운동을 불러일으킬만큼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데 비해, 국내에서는 '해외토피' 감 정도로 가볍게 취급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네이션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식수준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 재일동포만이 지문날인을 강요받는 것에 대해 분개하다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누구나 지문날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는 맥이 빠졌던 우리사회의 현실과 관련된 것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웹사이트에서의 개인신상정보에 대해 가이드라인 내지 법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런데, 인터넷이 갖는 개방성, 무정부성, 익명성 등을 고려할 때 이 문제에 대해 단순히 법·제도적인 방법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보사회는 성숙한 정보시민을 요구하며, 정보시민은 정보이용능력만이 아니라 정보시민의식(정보윤리의식과 정보권리의식)을 갖춰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상의 개인정보에 대한 규범을 세워가는 자 각자 네이션들의 정보시민운동은 정보사회를 앞당기는 중요한 동인이라 생각된다. ♣